

무역위원회 의결서

2022.7.21.
의결 제2022-9호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2-1호)

2022. 7. 21.

무역위원회

조사번호 : 구제 23-2022-1호

안건명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예비판정

신청인 :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061

피신청인 : <중국>

1.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 및 그 관계사¹⁾
No. 2395, East Pingan Street, Longmen Sub-district, Pingyuan,
Shandong, P.R. China²⁾
2.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이하 “효성자성”) 및 그 관계사³⁾
No.1888, Dongfang Road, Jiaxing EDZ, Zhejiang, China⁴⁾
3. 그 밖의 공급자
<태국>
 1.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 95 Thakarm Rd., Samaedam, Bangkhuntien, Bangkok, Thailand 10150
 2. 그 밖의 공급자

1) 더저우동홍 및 그 관계사: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이하 “창저우패킹”),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이하 “충칭밍주”),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이하 “창저우플라스틱”) 등 5개사

2) 각 관계사의 주소는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3) 효성자성 및 그 관계사: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이하 “효성자성”), 효성화학주식회사 등 2개사

4) 각 관계사의 주소는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인도네시아>

1.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
 - Raya Serang Km80, Serang Banten, 42183, Indonesia
2. 그 밖의 공급자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등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위원회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다.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잠정덤핑방시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중국>

- 더저우동흥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8%
- 효성자싱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08%
-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 그 밖의 공급자: 24.81%

<인도네시아>

-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그 밖의 공급자: 46.71%

이 유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이하 ‘신청인’)가 2022.1.7.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신청인,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제3.1조⁵⁾와 관세법 제63조 제1항⁶⁾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주문과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⁷⁾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개시하며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덤핑방시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다 음

I. 배경

신청인은 2022.1.7.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5)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6)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이하 생략)”
 7) 관세법 제61조 제5항 :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2022.2.28.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신청인 1개사이며,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 통관자료상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중국의 효성자싱, 더저우 동흥, 태국의 에이제이피, 인도네시아의 코롱이나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⁸⁾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실은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등 국내 수입자와 수요자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조사대상물품, 물품통제코드 변경 요청 검토 및 국내 동종물품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⁹⁾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조사대상물품과 관련, 무역위원회공고 제2022-5호(2022.02.28.)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이다. 조사범위는 연신가공된, 두께 25 μ m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이고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관세품목분류번호¹⁰⁾는 HSK

8)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대한민국수출물량은 중국의 xxx%, 태국의 xxx%, 인도네시아의 xxx%에 해당한다.

9)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무역위원회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 “조사대상물품”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0) 관세품목분류번호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3920.92.0000이다.

예비조사보고서¹¹⁾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은 고투명, 고풍택, 무독성 등 필름의 일반 특성과 함께, 다른 필름에 비해 뛰어난 내열성 및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대상물품은 국내 수입상이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물품통제코드 변경 요청 검토

예비조사보고서¹²⁾에 의하면, 효성자싱은 조사실이 제시하고 있는 물품통제코드가 등급, 두께, 표면처리, 형태의 네 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용도 또는 기능에 대해서도 구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실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용도 기준은 객관적인 산업기준이 아니며, 제품이 용도별로 구분되지 않는 공급자가 존재하고, 구매자 또는 수요자는 생산자가 정한 제품구분에 맞춰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물품을 구별하는 확정적 요소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기존의 물품통제코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3. 국내 동종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에 따르면,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다.

11) 예비조사보고서 pp.4~5.

12) 예비조사보고서 p.39.

예비조사보고서¹³⁾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공정,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 국내 생산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가. 물리적 특성

1) 신청인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¹⁴⁾에 의하면, 신청인측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은 두께, 인장강도, 인장신도, 수축률, 흐림도 등 각 물리적 특성 값이 KS 규격 내에 있어 유의할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2) 수입자 및 수요자측 주장

조사 답변서에서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다른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이 물리적 강도, 쉘(curl) 방지효과 등 특성이 우수하다고 답변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FITI시험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두께, 인장강도, 인장신도, 수축률, 흐림도 등의 물리적 특성 값이 모두 KS 허용기준 내에 있는 점을 볼 때,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13) 예비조사보고서 pp.8~15.

14) 예비조사보고서 pp.8~10.

나. 구성요소 및 용도

예비조사보고서¹⁵⁾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카프로락탐(Caprolactam)을 중합시켜 제조된 폴리아미드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그 구성요소 및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 품질 및 소비자 평가

1) 수입자 및 수요자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¹⁶⁾에 의하면, 일부 수입자·수요자는 기본적인 용도면에서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나, 동시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된 일부 중국산 조사대상물품은 쉘(Curl) 방지효과 등 품질이 축차이축연신 방식의 국내생산품 대비 우수하여 최종 수요자들이 중국산 조사대상물품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효성화학(주)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은 유사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조사대상물품은 두께 평활도가 좋으며, 쉘(Curl) 방지효과가 국내생산품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이 축차이축연신방식이더라도 생산된 제품의 중앙(Center) 부분과 원형 다이법(또는 Tubular 법) 방식으로 생산된 국내생산품은 동시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된 조사대상물품과 쉘방지 기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품의 특정위치에서만 대체가능한 것으로 이것으로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5) 예비조사보고서 p.10.

16) 예비조사보고서 pp.11~14.

2) 신청인측 의견

신청인은 국내의 다수 수요자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교차 사용하고 있고, 두 물품간의 경쟁으로 판매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등락하는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이 유사하고 소비자 평가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에 따르면, 쉘(Curl) 방지 기능은 포장봉투 제조에 있어서 완제품의 뒤틀림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동 기능이 있는 제품의 수요업체는 일부 “삼방봉투(삼면이 밀봉된 봉투)” 포장소재 제조업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쉘방지 기능은 동시이축연신 제품만의 고유 특성은 아니며, 축차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중앙(Center)부분과 원형 다이법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도 쉘(Curl) 방지 기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포장봉투 제작에 폴리아미드 필름과 함께 합지되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의 제품 안정성이 최근 향상되어 폴리아미드 필름에 약간의 쉘(Curl)이 발생하더라도 쉘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여, 최종 제품에는 쉘(Curl)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포장수요가 동시이축연신 제품만을 요구한다면, 그 가격이 폭등했을 것이고, 원형 다이법 방식과 축차이축연신 방식 제조사는 없어졌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는바, 결국 쉘(Curl) 방지 기능이 높은 필름에 대한 수요는 수요자의 사업상황에 따른 것이지 국내수요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수입자가 동시연신 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고자 한다면 효성화학(주) 및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서도 충분히 구매가능하며, 효성화학(주)의 중국산 물품도 국내생산품과 동일하게 축차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쉘(Curl)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생산품과 동일한 입장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효성화학(주) 등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들은 동시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된 일부 조사대상물품(특히 중국산)은 쉘(Curl) 방지기능 등 일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국내생산품 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 신청인이 다수의 수요자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교차 사용하고 있고 두 물품간의 경쟁으로 판매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등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ii) 다른 일부 수입자와 수요자들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점, iii) 신청인은 동시이축방식 조사대상물품은 일부 삼방봉투 제조용 수요에 한정되며 삼방봉투 제조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가 합지됨에 따라 쉘(Curl)이 교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 iv) 포장수요가 동시이축연신 제품만을 요구했다면, 가격이 폭등하고 원형 다이법 방식과 축차이축연신 방식 제조사는 없어졌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는바, 쉘(Curl) 방지기능 필름에 대한 수요는 수요자의 사업상황에 따른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v) 신청인이 제출한 FITI시험연구원의 물리적 특성 비교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모두 KS 허용기준 내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유사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신청인, 수입자 및 수요자들 간에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볼 때, 추후 본 조사에서 현실사,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라. 기타

예비조사보고서¹⁷⁾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 측면에서도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종합 검토

17) 예비조사보고서 pp.10~14.

따라서, 위원회는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품명, 정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품질 및 소비자평가, 유통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Ⅲ.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1.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및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¹⁸⁾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국내총생산량 비중,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국내생산자의 조사대상물품 수입 여부, 국내생산자의 당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21.5.1.~2021.10.31.)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조사실은 조사신청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인 인도네시아 PT. KOLON INA

18) 예비조사보고서 pp.21~23.

社の 지분 78.75%를 보유하고 있고 그 출자목적이 경영참여이며 종속회사로 포함시키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21.5.1.~2021.10.31.)에 특수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PT. KOLON INA社로부터 조사대상물품 xxx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바, 이는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조사대상물품 전체 수입물량의 xxx% 및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물량의 xxx%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으로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인 인도네시아의 PT. KOLON INA社와 특수관계에 있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21.5.1.~2021.10.31.)에 특수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PT. KOLON INA社로부터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효성화학(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21.5.1.~2021.10.31.)에 조사대상물품 xxx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바, 이는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조사대상물품 전체 수입물량의 xxx% 및 對중국 수입물량의 xxx%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으로서 효성화학(주)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효성화학(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2021.5.1.~2021.10.31.)에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효성화학(주)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신청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효성화학(주) 등 국내생산자 3개사 중 코오롱인더스트리(주)와 효성화학(주)는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 건 예비조사에 있어서 국내산업의 범위에는 신청인 1개 국내생산자만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2020년도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합계(xxx톤)는 국내산업의 국내총생산량(xxx톤)의 100%로서, 본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한다.

2. 국내산업의 범위 및 국내산업 피해지표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가. 효성화학(주)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¹⁹⁾에 의하면, 효성화학(주)는 국내산업의 범위와 관련, 국내생산의 xxx% 수준인 신청인은 대표성이 없으므로, 국내생산의 xxx%를 차지하는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도 국내생산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효성화학(주)는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임의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강행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효성화학(주)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였고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 국내산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생산의 약 xxx%를 점하는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경우, 국내생산의 약 xxx% 수준인 신청인의 경영실적만으로는 덤핑물품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

19) 예비조사보고서 pp.24~25.

였다.

아울러, 효성화학(주)는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며, 국내생산자의 생산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인 “Wood Mackenzie Chemical” Report(2021년)를 바탕으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을 추정해 보면, 신청인의 추정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xxx%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효성화학(주)는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피해 조사와 관련, WTO반덤핑협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신청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덤핑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에서도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효성화학(주)는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덤핑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피해지표 뿐만 아니라, 조사신청서에서 누락된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경영 및 산업피해지표 등 증빙자료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국내산업의 피해를 검토하여야 하며, 본 조사는 예비판정에서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효성화학(주)는 조사개시 결정 시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사실이 “국내생산자 질의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2022.6.30.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임의제출하였다.

나.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주장

예비조사보고서²⁰⁾에 의하면,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조사개시 결정 시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사실이 “국내생산자 질의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2022.5.4.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임의제출하였다.

20) 예비조사보고서 p.25.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국내생산자 답변서의 임의제출 사유를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현황을 더 객관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품 수불관리, 판매관리, 제품가격 등 대부분의 경영·회계정보를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을 구분 관리하고 있어 수입품효과를 제거한 국내생산품에 한정하여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신청인측 주장

예비조사보고서21)에 의하면, 신청인측은 효성화학(주)가 조사개시결정의 오류나 추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바, 효성화학(주)의 억지주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은 이해관계인들의 답변서 제출이 완료된 現시점에서 효성화학(주)에게 산업피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무역위원회가 효성화학(주)에게 수출자, 수입자 및 국내생산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조사의 공정성 문제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효성화학(주)가 자신의 산업피해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대상물품의 최대 수입자로서 자신의 산업피해지표의 수입품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측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국내생산자 답변서의 질의사항 및 답변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화학(주)가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동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제출기한내에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1) 예비조사보고서 p.26.

라. 조사실 검토

예비조사보고서22)에 의하면, 조사실은 “I.4.나.국내산업의 범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건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의 범위에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1개 국내생산자만 포함되므로, 본 건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에도 이와 동일하게 국내산업의 범위를 정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게 국내수입자 질의서를 발송(2022.3.3.)하되, 국내생산자 질의서는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제출한 국내생산자 답변서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국내산업 현황 자료라는 주장과 관련, 조사실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국내생산자가 아니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자이므로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국내산업 현황자료로 볼 수 없다고 검토하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을 구분하여 회계관리하고 있어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제출한 국내생산자 답변서는 수입품 효과가 제거된 국내생산품에 한정된 답변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러한 주장과 달리, 조사실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수입품과 국내생산품 전체를 포함한 회사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수입정책, 생산정책, 가격정책, 판매정책, 고용정책 등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며, 아울러, 위와 같은 구분 회계관리 주장과 달리, 직원 급여, 임차료, 운반비, 감가상각비 등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 등은 회계상 구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조사개시 결정 시 국내산업에서 제외된 조사대상물품 수입자인 효성화학(주) 및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국내생산자로 포함할 경우, 동 결정과 상반된 당초 조사실의 조사개시 결정의 타당성 여부도 다툴의 소지가 있다

22) 예비조사보고서 pp.26~27.

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건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생산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산업피해지표)’ 등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3.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신청서, 조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 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보고서²³⁾에 의하면, 신청인,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해관계인 회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 조사대상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가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한 점, 비밀취급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IV. 덤핑사실

23) 예비조사보고서 pp.34~36.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예비조사보고서²⁴⁾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통관자료를 통해 약 10여개의 공급자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사기간 내에 모든 공급자에 대해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impracticable)하였다. 이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²⁵⁾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²⁶⁾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수출물량이 많은 중국의 효성자싱, 더저우동흥, 태국의 에이제이피, 인도네시아의 코롱이나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²⁷⁾하였다.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중 중국의 효성자싱, 더저우동흥, 태국의 에이제이피는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022.3.18.~3.21.)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코롱이나는 대응하지 않았다.

한편, 조사참여 신청기간²⁸⁾ 동안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²⁹⁾에 따른 자발적 조사참여를 신청한 공급자는 없었다.

2. 덤핑사실 조사경과

예비조사보고서³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2.2.28.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4) 예비조사보고서 p.37.

25)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전략) 당국은 그 선정시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이해당사자를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전략)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26)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략)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7)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대한민국 수출물량은 중국의 xxx%, 태국의 xxx%, 인도네시아의 xxx%에 해당한다.

28) 조사참여신청기간: 2022. 2.28. ~ 3.21.

29) “(전략) 부당하게 당국에 부담이 되고 조사의 적시 종결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은 최초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적시에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자발적인 대응이 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30) 조사보고서 p.38.

태국의 에이제이피는 2022.3.24.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중국의 동홍과 효성자싱은 2022.4.4.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조사실은 각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022.4.11.이었던 답변기한을 2022.4.25.로 2주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중국과 태국의 조사대상공급자는 연장된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인도네시아의 조사대상공급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실은 2022.6.17. 조사대상공급자 에이제이피에게, 2022.6.22. 더저우동홍에게, 2022.6.24. 효성자싱에게, 원답변서의 검증을 위한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에이제이피와 더저우동홍, 효성자싱은 각각 답변기한인 2022.6.24., 2022.6.28., 2022.6.30.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2022.6.30. 에이제이피에게 추가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에이제이피는 답변기한인 2022.7.4.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4항, 반덤핑협정 제2.2.1.1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 중국 >

가. 더저우동홍(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예비조사보고서³¹⁾에 따르면 더저우동홍은 생산자 겸 수출자로 중국의 산둥성 더저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창저우패킹, 창저우필름, 충칭밍주, 창저우플라스틱 등 4개의 관계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이하 “피신청인”)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내수시장, 한국, 제3국 시장에 판매하였다. 내수판매의 경우 관계사 또는 비관계사를 통해 판매하였고, 한국수출의 경우 직접판매를 통해 이루어졌다.

31) 예비조사보고서 pp.40~46.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의 구성방법으로 등급, 두께, 표면처리, 형태 등 4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³²⁾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당초 제시한 CCN을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을 실시하여,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임, 신용비용, 포장비를 차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수수료 및 포장비 등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CIF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5.18%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덤핑률 산정에 있어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5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률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나. 효성자싱(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및 그 관계사

32)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022.2.28.~3.28.)를 제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은 CCN 관련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연장된 답변서 제출기한에 이르러서야 답변서 내에 CCN 구성에 관한 자사의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제출기한인 2022.3.28일에서 4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여타 피신청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다. 피신청인은 CCN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생산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등급을 세분화하고자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실은 등급변경은 CCN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2.7.13. 이해관계인 회의)

예비조사보고서³³⁾에 따르면 효성자싱은 생산자 겸 수출자로 중국의 저장성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효성화학, 효성티앤씨(주), 효성트랜스월드(주) 등 3개의 관계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이하 “피신청인”)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내수시장, 한국, 제3국 시장에 판매하였다. 내수판매의 경우 비관계사를 통해 판매하였고, 한국수출의 경우 관계사 또는 비관계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졌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의 구성방법으로 등급, 두께, 표면처리, 형태 등 4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용도 또는 기능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조사실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거쳤다. 그러나,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용도 기준이 객관적 산업기준이 아니며, 제품이 용도별로 구분되지 않는 공급자가 존재하고, 구매자 또는 수요자는 생산자가 정한 제품구분에 맞춰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물품을 구별하는 확정적 요소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제시한 기존의 물품통제코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하여,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산정하여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임, 창고비용,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핸들링비용, 신용비용, 수수료, 포장비 등을 차감하였다. 피신청인

33) 예비조사보고서 pp.47~54.

청인이 특수관계사인 효성화학을 통하여 한국에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 효성화학의 간접판매비와 이윤을 조정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³⁴⁾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5.08%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덤핑률 산정에 있어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5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률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다. 그 밖의 공급자³⁵⁾

예비조사보고서³⁶⁾에 의하면, 조사실은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들의 예비덤핑률을 대한민국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5.12%의 그 밖의 공급자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 예비덤핑률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 태국 >

가. 에이제이피(A. J. Plast Public Co., Ltd.)

예비조사보고서³⁷⁾에 따르면 에이제이피는 생산자 겸 수출자로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관계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이제이피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내수시장, 한국, 제3국 시장에 판매하였고, 내수판매 및 대한민국 수출 시 무역상을 경유

34) Cost, Insurance and Freight

관세법 제30조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35)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한다.

36) 예비조사보고서 p.55.

37) 예비조사보고서 pp.56~62.

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민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의 구성방법으로 등급, 두께, 표면처리, 형태 등 4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이³⁸⁾ 답변서를 제출하였기에 당초 제시한 CCN을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하여, 통상거래가격으로 확인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다.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산정하여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였으며,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임, 보험,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임, 해상운임, 신용비용, 커미션, 포장비용 등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과세가격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CIF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24.81%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덤핑률 산정에 있어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5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률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나. 그 밖의 공급자³⁹⁾

예비조사보고서⁴⁰⁾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38) 조사실은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2022.2.28. ~3.28.)를 제공하였다.

39)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한다.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의 예비덤핑률인 24.81%를 그 밖의 공급자 예비덤핑률로 적용하였다.

< 인도네시아 >

가. 코롱이나(PT. KOLON INA)

예비조사보고서⁴¹⁾에 의하면, 조사실은 코롱이나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였고,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코롱이나는 조사참여신청서와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 2⁴²⁾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대상공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예비판정을 내릴 수 있다. 코롱이나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덤핑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조사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및 신청인의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⁴³⁾ 제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조사실은 40일 이상의 답변기간(22.2.28.~22.4.11.)을 정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에 따르면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비교점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덤핑가격의 산정에 사용된 수입통계가 조사대상기간 중 독립된 기관인 관세청 통관자료로서 공식 수입통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40) 예비조사보고서 p.62.

41) 예비조사보고서 pp.63~65.

42)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 “.....(전략)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 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43)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실은 정상가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고려한 조사신청서 상의 정상가격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정요소는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입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정한 비교를 위해 덤핑가격의 조정요소에서도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코롱이나(PT. KOLON INA)가 조사대상기간(2020.7.1.~2021.6.30.) 동안 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의 평균수입단가(CIF 가격)를 사용하였고, 조정요소는 신청인이 해상운송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통해 산정된 해상운임 및 보험자료를 적용하였다.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코롱이나의 수입단가를 사용하였으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46.71%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2의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코롱이나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실이 WTO 협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나. 그 밖의 공급자⁴⁴⁾

예비조사보고서⁴⁵⁾에 의하면,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의 예비덤핑률인 46.71%를 그 밖의 공급자 예비덤핑률로 적용하였다.

4. 덤핑사실 조사결과 종합

예비조사보고서⁴⁶⁾에 의하면, 조사실이 조사대상기간('20.7.1.~'21.6.30.) 중의 조사대상공급자들의 덤핑사실을 조사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5.8조⁴⁷⁾에서 규정

44)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한다.

45) 예비조사보고서 p.65.

46) 예비조사보고서 p.66.

한 최소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5.08~46.71%의 예비덤핑률이 산정되어 덤핑방지관세의 대상이 되는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위 산정된 덤핑률이 관세법 시행령 5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 대로 조사대상공급자별 예비덤핑률을 결정한다.

V.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및 제3.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하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⁴⁸⁾에 기초하여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47) “(전략)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마진은 최소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후략)”

48) 예비조사보고서 pp.75~99.

가동률, 판매량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등 덩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 덩핑물품의 누적 평가 적용 여부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르면,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덩핑차액 및 덩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덩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해당 WTO반덤핑협정 제3.3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사건의 누적평가 적용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가. 덩핑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조건 충족 여부

예비조사보고서49)에 의하면, 덩핑물품의 공급국별 예비덤핑률은 각각 중국 5.08~5.18%, 태국 24.81%, 인도네시아 46.71%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이며, 조사대상물품의 총수입물량 대비 덩핑물품의 국가별 수입물량 비중은 덩핑률 조사대상기간(‘20.7월~’21.6월) 동안 중국산 xxx%, 태국산 xxx%, 인도네시아산 xxx%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 이상이므로, 위원회는 덩핑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다.

나. 경쟁조건의 판단기준

조사실은 덩핑물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덩핑물품 상호간 및 덩핑물품과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들 간의 대체사용 가능성, 유통채널의 유사성,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다. 덩핑물품간 경쟁조건

49) 예비조사보고서 p.70.

예비조사보고서50)에 의하면, 신청인은 덩핑물품 간에 물품의 구성요소 및 용도, 생산방법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신청인을 제외한 국내생산자들은 덩핑물품과 국내생산품을 함께 공급하고 있다는 점, 대형 국내수입자는 덩핑물품을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고 있다는 점 등은 덩핑물품간에 경쟁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덩핑물품의 누적적 평가와 관련한 덩핑물품간 경쟁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실은 중국산, 태국산 및 인도네시아산 덩핑물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 주장과 같이 덩핑물품간에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방법, 유통경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덩핑물품은 매년 국내시장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므로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톤당 판매가격을 보면, 중국산은 xxx⁵¹⁾~xxx원, 태국산은 xxx~xxx원, 인도네시아산은 xxx~xxx원으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가격대에 있으며, 덩핑물품 중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태국산(△8.6%)은 시장점유율이 확대(6.0%p)되었으나 연평균 가격 하락폭이 가장 작은 인도네시아산(△2.4%)은 시장점유율이 축소(△4.8%p)된 점 등을 볼 때, 덩핑물품은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덩핑물품과 동종물품간 경쟁조건

예비조사보고서52)에 의하면, 신청인은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구성요소 및 사용용도가 동일하고, 생산방식이 유사하며, 일부 국내생산자는 덩핑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덩핑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국내산업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누적

50) 예비조사보고서 pp.70~72.

51) 백(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52) 예비조사보고서 pp.72~74.

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그 주요 구성요소가 폴리아미드 로 동일하고, 모두 폴리아미드를 연신하여 제조하므로 생산방법이 동일하며, 모두 식품, 의약품 등의 포장소재로 사용되어 용도도 동일하고, 동일한 수요자에 대해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이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덩핑물품의 누적적 평가와 관련하여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다. 그러나,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는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들은 조사답변서에서 덩핑물품의 수입이유 중의 하나로 “저렴한 가격”을 들고 있어,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이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신청인,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대체로 가격과 품질 등이 고려되어 그 수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되는 것으로 보이며,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중 덩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의 저가로 판매 되었으며,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연도별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도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과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내생산품은 덩핑물품과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조사실은 신청인, 수입자 및 수요자들간에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볼 때, 추후 본 조사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마. 종합검토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덩핑물품은 미소덩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이상이며, 국내시장에서 덩핑물품간 상호 경쟁조건에 있고 덩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도 상호 경쟁조건에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덩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누적적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2. 덩핑물품 수입의 효과 : 물량 및 가격 효과

가. 덩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1) 덩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예비조사보고서⁵³⁾에 의하면,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18년 1,000톤에서 2019년 1,355톤, 2020년 1,410톤, 2021년 1,420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덩핑물품 수입의 상대적 증가 여부

예비조사보고서⁵⁴⁾에 의하면, 덩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18년 xxx%에서 2019년 xxx%, 2020년 xxx%로 상승하다가 2021년 xxx%로 하락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18년 xxx%에서 2019년 xxx%, 2020년 xxx%로 하락하다가 2021년 xxx%로 반등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3.2%p 하락하였고,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xxx%에서 2019년 xxx%, 2020년 xxx%로 하락하다가 2021년 xxx%로 반등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덩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53) 예비조사보고서 p.75.

54) 예비조사보고서 pp.76~77.

1)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예비조사보고서55)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18년 10,000천원에서 2019년 8,862천원, 2020년 7,032천원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8,871천원으로 상승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18년 10,000천원에서 2019년 8,510천원, 2020년 7,227천원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8,036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연도별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 수입자측 주장

효성화학(주)는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덤핑물품은 수입상의 관관비(예, 운반비)와 이윤 등이 추가되어 수입가격과 대리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가격은 차이가 있는바, 신청인의 국내 동종물품의 최종 판매가격과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을 비교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측 주장

신청인은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낮으며, 덤핑물품의 재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보다 저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수입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조사실 검토

55) 예비조사보고서 pp.78~80.

조사실은 국내 동종물품 및 덤핑물품 가격비교 기준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판매하는 공장도 판매가격 기준이며, 공장도 판매가격은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최초로 판매한 가격이므로, 신청인이 최초로 유통대리점(또는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덤핑물품 공급자가 최초로 국내 수입자(수입상 또는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공장도 판매가격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2)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가)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여부

예비조사보고서56)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 대비 2018년 xxx%,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의 낮은 판매가격 수준을 보였고, 국내 동종물품 대비 덤핑물품의 가격차이도 2018년 △xxx원, 2019년 △xxx원, 2020년 △xxx원, 2021년 △xxx원으로서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예비조사보고서57)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연평균 3.9% 하락한데 대해 국내 동종물품은 연평균 7.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된 점,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가 조사대상기간 중 거의 변화가 없었고(연평균 0.7%) 내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

56) 예비조사보고서 p.81.

57) 예비조사보고서 pp.81~82.

이 2018년 xxx%,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계속 상승한 점,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가격은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에 영향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예비조사보고서⁵⁸⁾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 보다 2018년에는 xxx원 높았으나, 이후 2019년에는 xxx원, 2020년에는 xxx원, 2021년에는 xxx원 낮았으며, 지속적으로 가격차이가 확대되는 추세로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 대비 2018년 xxx%,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등락 방향이 일치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2019년 이후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 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가격차이가 확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가격이 상승 억제되어 제조원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덤핑물품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3.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량 및 가동률

예비조사보고서⁵⁹⁾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간 약 xxx톤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18년 1,000톤에서 2019년 912톤, 2020년 864톤으로 각각 8.8%, 5.3%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864톤으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58) 예비조사보고서 p.83.
59) 예비조사보고서 pp.84-85.

동일한 수준이나 생산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가동률도 2018년 xxx%, 2019년 xxx%, 2020년 xxx%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xxx%로 소폭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1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나. 판매 및 재고

예비조사보고서⁶⁰⁾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2018년 1,000톤에서 2019년 956톤, 2020년 890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928톤으로 상승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18년 1,000톤에서 2019년 1,044톤으로 4.4%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1,032톤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1,230톤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2018년 1,000톤에서 2019년 870톤, 2020년 946톤, 2021년 529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가 연평균 10.2% 증가하고, 기타국산 수입물량이 연평균 9.0% 증가한 상황에서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연평균 7.2% 증가하는데 그친 것은 덤핑물품 수입물량이 연평균 12.4%의 더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 시장점유율

예비조사보고서⁶¹⁾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xxx%에서 2019년 xxx%, 2020년 xxx%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xxx%로 상승하여 조사

60) 예비조사보고서 pp.85-86.
61) 예비조사보고서 p.87.

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3.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018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동종물품과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2018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한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한다.

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예비조사보고서⁶²⁾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내수 판매가격은 2018년 10,000천원에서 2019년 8,510천원, 2020년 7,227천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14.9%, 15.1%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8,036천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7.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18년 10,000천원에서 2019년 8,867천원, 2020년 7,645천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11.3%, 13.8%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10,213천원으로 전년대비 33.6%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0.7%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제조원가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은 제조원가의 xxx~xxx%를 차지한 단위당 재료비가 조사대상기간 중 그 하락폭(연평균 △0.7%)이 미미하였고, 제조원가 중 비중이 낮은 단위당 노무비와 경비가 각각 연평균 5.4%, 5.1%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원재료인 폴리아미드 레진은 국제석유가격에 연동되는바, 톤당 폴리아미드 레진 가격은 2018년 10,000천원에서 2021년 9,527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7%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제조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인 폴리아미드 레진 가격도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가격이 조사대상기간

62) 예비조사보고서 pp.88-89.

중 연평균 7.0%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연평균 △3.9%)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⁶³⁾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예비덤핑률은 5.08~46.71%로 덤핑마진의 크기가 미소마진 이상이므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덤핑마진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마.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예비조사보고서⁶⁴⁾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18년 10,000백만원⁶⁵⁾에서 2019년 5,189백만원, 2020년 3,127백만원, 2021년 1,687백만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4.7%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수부문 영업이익률도 2018년 xxx%에서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13.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부문 영업이익 악화 추세는 앞서 ‘가격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국내 시장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을 인하(연평균 △7.0%)한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수입자측은 내수시장에서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국내산업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2019년의 경우 판매관리비 중 감가상각비가 대폭 증가(전년대비 617%)한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매출량(연평균 7.2%)은 증가하였으나 내수 매출액은 감소(연평균 △0.4%)하였는바, 운반비 등 판매관리비는 매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연평균 2.9%)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63) 예비조사보고서 p.89.

64) 예비조사보고서 pp.90-91.

65) 십만(100,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주장하였다. 아울러, 2019년 판매관리비 상 감가상각비의 급격한 증가는 지속가능한 경영차원에서 이루어진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내수 매출액의 감소(연평균 △0.4%)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량 증가(연평균 7.2%)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증가(연평균 2.9%)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2019년 판매관리비 상 감가상각비의 급격한 증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로 인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66)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투자수익률은 2018년 xxx%에서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15.7%p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조사보고서67)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8년 10,000백만원 현금유입에서 2019년 11,770백만원 현금유입, 2020년 7,780백만원 현금유입, 2021년 2,194백만원 현금유입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9.7% 감소하여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고용 및 임금, 생산성 및 성장성

예비조사보고서68)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2018년 1,000명에서 2019년 943명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나, 2020년 981명, 2021년 1,057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4.0%, 7.7% 증가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1.9% 증가하였고, 국내산업의 1인당 평균임금은 2018년 10,000천원에서 2019년 9,840천원, 2020년 9,525천원, 2021년 9,277천원으로 매년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고용인원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66) 예비조사보고서 p.92.
67) 예비조사보고서 p.92.
68) 예비조사보고서 pp.93~94.

1인당 평균임금은 지속 감소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수입자측은 2018~2021년 중 동종물품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의 생산직 연평균 고용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방만한 고용관리가 손익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중소기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능하면 매년 신규인원을 채용하고자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2021년의 고용인원 증가(xxx명)는 신입사원 등의 채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고용인원은 생산직이 연평균 2.4% 증가하였으나, 사무직은 변동이 없음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 합계는 2018년 xxx명에서 2021년 xxx명으로 연평균 1.9%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국내산업의 고용인원 증가에 대해 방만한 고용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를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의 하나라고 보기에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69)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량,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연평균 1.9%증가)에서 생산량, 총매출액 및 총부가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연평균 6.5~24.0%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생산량은 2018년 1,000톤, 2019년 967톤, 2020년 880톤, 2021년 818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5% 감소하였고, 1인당 매출액은 2018년 10,000백만원, 2019년 8,566백만원, 2020년 6,600백만원, 2021년 7,457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3% 감소하였으며, 1인당 부가가치는 2018년 10,000백만원, 2019년 7,145백만원, 2020년 5,696백만원, 2021년 4,393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생산성 관련 지표가 악화 된 것은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으로 생산량,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69) 예비조사보고서 p.95.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70)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덩핑물품의 영향으로 내수부문에 있어서 매출액 감소와 지속적인 영업이익 감소로 인하여 내부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 등 성장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사.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예비조사보고서71)에 의하면,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인 내수부문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내부 자본조달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예비조사보고서72)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설비투자액은 2018년 10,000백만원에서 2019년 11,7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으나, 2020년 5,4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4%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8,23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0.3%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6.3% 감소하였으며, 국내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8년 10,000백만원에서 2019년 7,775백만원, 2020년 6,86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2.2%, 11.8%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8,22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6.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자측은 국내산업이 2019년 대규모 설비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은 변동이 없는바, 생산능력의 변동이 없는 대규모 수익적 지출에 대한 규명과 무분별한 설비투자로 인한 손익악화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19년 판매관리비 상 감가상각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에 따른 것으로서, 설비투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매년 xxx억원 수준 내외로 지출된바, 이는 생산설비를 신설할 정도의 투자금액은 아니며, 태양광설비, 저탄소냉난방장치 등의 친환경투자와 제조설비 중 일부인 슬리터의 교체 등 생산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하였다.

70) 예비조사보고서 p.96.

71) 예비조사보고서 p.96.

72) 예비조사보고서 pp.97~98.

조사실은 신청인에 따르면, 2018년 공장건물 신축 및 개선(약 xxx억원), 2019년 태양광발전 설비 신설(약 xxx억원), 2020년 저탄소 배출 냉난방기 교체(약 xxx억원), 2021년 슬리터 교체(약 xxx억원) 등 생산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내산업의 투자수익률(투자자산 총액 대비 내수 영업이익 비율)이 2018년 xxx%, 2019년 xxx%, 2020년 xxx%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신청인의 설비투자가 무분별한 것이고, 아울러, 이와 같은 투자가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인 것으로 보기에 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다.

아. 검토 종합

이상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은 연평균 고용인원, 기말재고 등과 같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선된 부문도 있지만, 생산량 및 가동률, 내수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임금,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대부분의 피해 지표가 덩핑물품의 수입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위원회는 조사실이 조사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덩핑물품의 저가 판매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국내산업은 시장점유율 축소와 함께, 판매 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금흐름,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약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저해됨으로써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VI. 덩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덩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덩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덩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

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덤핑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물량 및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가격에 미친 효과(물량 및 가격효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등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와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

예비조사보고서⁷³⁾에 의하면, 예비조사보고서 “Ⅲ.2.다.1)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연평균 12.4%)하고 시장점유율이 확대(2018년: xxx%→2021년: xxx%)됨에 따라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 동종물품은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량 증가(연평균 7.2%)가 국내소비 증가(연평균 10.2%)에 미치지 못하였고, 시장점유율은 하락(2018년: xxx%→2021년: xxx%)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예비조사보고서 “Ⅲ.2.다.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되면서 연평균 3.9%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톤당 제조원가가 거의 변화가 없고(연평균 0.7%),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19.2%p)과 영업이익 감소 추세 속에서도 가격이 하락(연평균 △7.0%)하였고, 2019년 이후 실제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그 가격차이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이 억제되는 등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되었다.

73) 예비조사보고서 pp.100~101.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예비조사보고서 “Ⅲ.2.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산업은 생산량 및 가동률의 하락, 시장점유율 축소와 함께, 제조원가 비중이 판매가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현금흐름,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약되고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이 저해됨으로써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일용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물품 수입 이외의 영향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예비조사보고서⁷⁴⁾에 의하면,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폴리amide 필름 수입물량은 2018년 1,000톤에서 2019년 787톤, 2020년 781톤으로 각각 전년대비 21.3%, 0.7%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1,295톤으로 전년대비 65.7%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9.0% 증가하였으나,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덤핑물품 보다 높았으며, 국내 동종물품 보다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나. 국내소비 변화

74) 예비조사보고서 pp.102~103.

예비조사보고서75)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폴리아미드 필름의 국내 소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2% 증가한 것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의 변화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 수출실적

예비조사보고서76)에 의하면, 효성화학(주)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업피해(신청인의 경영지표 중 내수판매에서의 영업이익의 악화)는 덤핑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수출 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및 이로 인한 고정비 증가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측은 수출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 보다 고정비 규모가 크지 않아 고정비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바, 영업이익 감소의 주원인은 고정비 부담 증가 보다는 덤핑물품으로 인해 제조원가 상승에 맞추어 판매가격을 적정하게 인상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출 영업이익률이 내수 영업이익률 보다 낮은 이유는 해상운송비, 해상보험료 등 수출비용 때문인바, COVID-19의 영향으로 '21년 해상운송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영업손익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18년 1,000톤에서 2019년 956톤, 2020년 673톤, 2021년 555톤으로 매년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7.8% 감소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xxx%에서 2021년 xxx% 수준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17.5%p 하락하였고, 톤당 수출 판매가격은 2018년 10,000천원, 2019년 8,530천원, 2020년 7,583천원, 2021년 9,160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9% 하락함에 따라 수출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xxx%, 2019년 xxx%, 2020년 xxx%, 20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21.4%p 하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변동비의 상당부분을

75) 예비조사보고서 p.104.
76) 예비조사보고서 pp.104~106.

차지하는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원재료비는 연평균 0.7% 소폭 하락하였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한 단위당 제조원가도 연평균 0.7% 소폭 증가한데 그친바,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고정비의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조사대상기간 중 수출판매량이 연평균 17.8% 감소함에 따라 수출부문 영업이익률이 21.4%p 하락한데 비해 내수판매량은 연평균 7.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 영업이익률은 13.8%p 하락한 점 등을 볼 때, 수출 실적 감소 및 이로 인한 고정비 증가가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손익악화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라.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예비조사보고서77)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xxx% 수준으로서, 주요 원재료는 폴리아미드 레진(resin)이며 기타 첨가제 등이 사용되며, 톤당 폴리아미드 레진 가격은 2018년 10,000천원에서 2019년 8,285천원, 2020년 6,502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7.2%, 21.5%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9,527천원으로 전년대비 46.5%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1.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가 연평균 0.7% 하락한데 비해 제조원가는 연평균 0.7% 상승함에 따라,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대상기간 중 3.3%p 하락(2018년 xxx% → 2021년 xxx%)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폴리아미드 레진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소폭 하락(연평균 △1.6%)한 것은 원가부담 완화로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바,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77) 예비조사보고서 pp.107~108.

마. 제품경쟁력 저하 및 과도한 설비투자

예비조사보고서⁷⁸⁾에 의하면, 효성화학(주)는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산업피해(신청인의 경영지표 중 내수판매에서의 영업이익 악화)는 덩핑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i)품질 및 원가 등 제품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원재료가격변동을 충분히 판매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한 점, ii)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의 급격한 상승, iii)수출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및 이로 인한 고정비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폴리아미드 필름은 대부분 포장용, 특히 식품포장용 수요가 많고 그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산업으로서, i)조사대상기간 중 유의할 만한 수요나 제조기술의 변화가 없는 점, ii)FITI시험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덩핑물품과 국내생산품간 물리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쉘(curl) 발생 문제도 신청인의 전체 거래기업의 일부이고 전체 거래액의 xxx%에 불과한 점, iii)최대수입자인 효성화학(주)가 중국 '효성자싱'으로부터 수입하는 덩핑물품도 신청인과 동일한 축차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국내생산품과 기본적인 품질이 유사하여 품질경쟁력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iv)신청인의 품질경쟁력이 낮았다면 조사대상기간 중 매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을 것이나 내수 영업이익률이 2018년 xxx%에서 2021년 xxx%로 하락한 점 등을 볼 때, 효성화학(주)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저하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저가 덩핑물품의 수입이 국내 시장가격을 하락시킨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19년 판매관리비 상 감가상각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에 따른 것으로서, 설비투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매년 xxx억원 수준 내외로 지출된바, 이는 생산설비를 신설할 정도의 투자금액은 아니며, 태양광설비, 저탄소냉난방장치 등의 친환경투자와 제조설비 중 일부인 슬리터의 교체 등 생산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유의미한 수요변화,

78) 예비조사보고서 pp.108~110.

제조기술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산업의 내수 영업이익률이 2018년 xxx%, 2019년 xxx%, 2020년 xxx%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FITI시험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덩핑물품과 국내생산품간 물리적 특성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산업의 품질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가 소폭 증가(0.7%)한데 비해 내수 판매가격은 7.0%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2018년 xxx%에서 2021년 xxx%로 크게 증가(19.2%p)한 것은 덩핑수입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산업의 내수 영업이익 악화는 국내 동종물품의 품질 및 원가 등 제품경쟁력 저하보다는 덩핑수입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신청인에 따르면, 2018년 공장건물 신축 및 개선(약 xxx억원), 2019년 태양광발전 설비 신설(약 xxx억원), 2020년 저탄소 배출 냉난방기 교체(약 xxx억원), 2021년 슬리터 교체(약 xxx억원) 등 생산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내산업의 투자수익률(투자자산총액 대비 내수 영업이익 비율)이 2018년 xxx%, 2019년 xxx%, 2020년 xxx%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신청인의 설비투자가 과도한 것이고, 아울러, 이와 같은 투자가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인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 것으로 판단한다.

바. 기타 요인

예비조사보고서⁷⁹⁾에 의하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 3.5조에서 열거한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상품 생산성 등 사항은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증빙이 충분히 포함된 주장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인과관계 종합검토

조사실은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덩핑물품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은 내수판매량 증가(연평균 7.2%)가 국내소비

79) 예비조사보고서 p.111.

증가(연평균 10.2%)에 미치지 못하였고, 시장점유율은 하락(2018년 xxx% → 2021년 xxx%) 하였으며, 덩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덩핑물품의 물량 및 가격 효과에 따라, 국내산업은 연평균 고용인원, 재고 등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선된 부문도 있지만, 생산량 및 가동률, 시장점유율 등이 하락 내지 악화되었고, 내수판매량 증가(연평균 7.2%)는 국내소비 증가(연평균 10.2%)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2018년 xxx% → 2021년 xxx%) 하면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 내지 그 상승이 억제됨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현금흐름, 자본조달 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이 저해되어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덩핑물품의 수입은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 국내소비의 변화,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 제품경쟁력 저하 및 과도한 설비투자가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인간에 의견이 상충되는데, 추후 본 조사를 통해 이용가능한 자료가 추가로 입수되거나 이해관계인들이 추가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원회는 조사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덩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같은 시점에서 덩핑물품의 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덩핑 물품의 수입에 인한 것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VII. 잠정조치 건의

예비조사보고서⁸⁰⁾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덩핑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3.4%p)하였고, 덩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인상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3.2%p), 내수 매출액(△0.4%p) 등이 감소하였고, 내수 판매량 증가(연평균 7.2%)는 국내소비 증가(연평균 10.2%)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률은 2018년 xxx%에서 2021년 xxx%로 급감하는 등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덩핑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2022년 상반기 덩핑물품의 수입량은 조사대상기간(2018~2021년) 상반기 평균 수입량 대비 약 50%대(2021년 상반기 대비 약 40%대) 증가한 바, 본조사기간 동안에도 예상되는 덩핑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악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덩핑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 공급자별 예비덤핑률에 해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80) 예비조사보고서 pp.114~116.

적용 법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제32조
관세법 제51조 ~ 제53조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 제65조, 제71조
WTO 반덤핑협정 제1조 ~ 제6조 등

붙임자료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중국>

1. 더저우동홍 및 그 관계사

- (1) 더저우동홍(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⁸¹⁾
: No. 2395, East Pingan Street, Longmen Sub-district, Pingyuan,
Shandong, P.R. China
- (2) 창저우패킹(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 Dongsu Industrial Park, Canghe Road, Yunhe District, Cangzhou, Hebei,
P.R. China
- (3) 창저우필름(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 East of Jilin Avenue, North of Yongji Road, High-tech Development
Zone, Cangzhou, Hebei, P.R. China
- (4) 충칭밍주(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 No.6 Mingzhu Road, Banqiao Industrial Park, Rongchang District,
Chongqing, P.R. China
- (5) 창저우플라스틱(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 Zhangzhuangzi Industrial Park, Cangshi Road, Cangzhou, Hebei,
P.R.China

2. 효성자싱 및 그 관계사

- (1) 효성자싱(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 No.1888, Dongfang Road, Jiaxing EDZ, Zhejiang, China
- (2) 효성화학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81) 더저우동홍은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 생산제품에 따른 사업부를 분할하여, 존속법인은 비
대상물품을 생산하고, 신규법인인 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Pingyuan County,
Dezhou, Shandong, P.R.China)에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한국 수출을 담당한다.

<태국>

3. 에이제이피

- (1) 에이제이피(A. J. Plast Public Co., Ltd.)
: 95 Thakarm Rd., Samaedam, Bangkhuntien, Bangkok, Thailand 10150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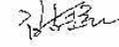
4. 코롱이나

- (1) 코롱이나(PT. KOLON INA)
: Raya Serang Km80, Serang Banten, 42183, Indonesia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2년 07월 21일

실장 김현철



위원 조영진



위원 이계영



위원 이종은



위원 현낙희

